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714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현

담당변호사 박희운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설연주

변론 종결 2019. 1. 17.

판결 선고 2019. 2. 1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1)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000주씩을 양도하고, E 주식회사에 위 주식 양도통지를 하라, 2) 원고 A에게 91,05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9.부터 이 사건 2019. 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제주시 F 전 5,670㎡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9. 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의 사망에 따른 상속 경과

1) 원고들과 피고의 부친인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 22.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피고가 상속절차를 도맡아 처리하되,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중 처인 H과 아들인 원고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딸인 피고는 한정승인을 하기로 합의하고, H과 원고들은 피고에게 맡겨 2014. 3. 25.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21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피고는 같은 날 위 법원 2014느단219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각기 2014. 7. 1.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3) 피고는 상속절차를 밟으면서 처리한 내용 중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 피고는 2014. 7. 14.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의 발행주식 5,000주 전부를 보유하면서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에 취임함과 아울러 그주주명부에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개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8. 망인이 소유하던 제주시 I 리(이하 행정구역 명은 'I 리'만 기재한다) J 임야 1,117㎡, F전 5,670㎡ 및 K 임야 200,256㎡ 중 15,471/206,281 지분에 관하여 2014. 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쟁송

1) 원고 A은 2014. 11. 1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 A이 망인의 차용금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 6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니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A에게 이를 구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36104호로 구상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22.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66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2016. 4. 27. 위 판결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L로 J 임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3. 9. 피고와 사이에 다음의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2017. 3. 9.자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서, 같은 날 피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합의 내용

1. 피고는 원고 A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36104호 구상금 사건의 채권금액 전액 변제 · 소멸 및 J 임야 1,117m² 관련 제주지방법원 L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매를 취하하는 것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취하 확인 후 제1항 기재 금원을 즉시 지급한다.
3.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및 망인 모 H에 대한 어떠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쟁송

- 1) 망인은 원고 B의 처인 M을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가단3444호로 K 임야 중 15,471/206,28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M은 그 절차에서 망인을 상대로 위 법원 2010가단12134호로

구상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2010. 11. 25. 원고 B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 조항

1. M은 원고 B에게 K 임야 중 M의 15,471/206,281 지분에 관하여 2010. 11. 25.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망인, 저당권자 원고 B, 채권액 8000만 원, 변제기 2011. 10. 31., 지연이자 변제기 후 연 20%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망인은 위 저당권설정의 채무자로서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2. M은 제1항 기재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망인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5.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하 생략)

2) K 임야 중 M의 15,471/206,281 지분에 관하여 2013. 3. 27. 원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곧바로 망인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K 임야는 2016. 5. 11. 제주지방법원 N로 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나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4) 원고 B은 2016. 10. 20. 피고를 상대로 하여 '단독상속인인 피고가 원고 B에게 위 근저당권피담보채무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법원 2016차193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10. 26. '피고는 원고 B에게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위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같은 법원2016가단16817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

5) K 임야는 2016. 12. 5. 위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원고 A은 2017.1. 6. 그 배당기일에서 위 근저당권피담보채무 원리금 163,024,657원을 배당받았다(원고 B은 같은 날 위 법원에 위 구상금 청구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J 임야 관련 피고의 배당금 수령

J 임야는 2017. 4. 19. 제주지방법원 O로 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10. 11.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피고는 그 배당절차에서 2017. 11. 17. 71,163,600원, 2018. 9. 14. 19,889,520원 등 합계 91,053,12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1, 14, 21, 22, 23,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6, 27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2014. 9. 8.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 A이 피고에 대한 어떠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이 사건 2017. 3. 9.자 합의에 위반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2017. 3. 9.자 합의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36104호 구상금청구사건과 원고가 제주지방법원 L로 받은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관련하여 성립된 점, 그 합의 내용에는 피고뿐 아니라 망인과 망인의 처인 H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합의가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권을 망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망인 사망 직후 상속재산이 파악되면 상속채무를 정산하고 나머지 적극재산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상속재산의 파악 및 상속절차 진행을 맡기었으며, 피고는 그 일환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대행하여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자신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그 후 피고가 상속재산 내역을 원고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반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9. 8.경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E 주식: 원고들 각 20%, 피고 40%
- E 소유의 P 전 4,798㎡ 중 2,835/5,234 지분: 원고들과 피고 공동 소유
- J 임야: 원고 A 단독 소유
- F 전: 원고 A과 피고 각 1/2 소유
- K 임야 중 15,471/206,281 지분: 원고 B 단독 소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① 원고들에게 각 E 발행 보통주 5,000주 중 20%에 해당하는 1,000주씩을 양도하고, E에 그 양도통지를 하며, ② 원고 A에게 J 임야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금 91,053,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F 전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믿었으며, 프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이 파악되면 상속채무를 정산하고 나머지 적극재산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원고들과 H은 상속절차에 신경 쓰는 것을 꺼려하여 피고가 상속절차를 도맡아 처리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H의 위임을 받아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자신은 망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망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 A, B이 2014. 9. 8. 피고에게 위 원고들에 대한 상속채무변제건으로 난동을 피워 채무변제방법을 논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별지 메모(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7, 8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들 및 H과 피고는 망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믿고서 법무사의 조언(원고 B은 2014. 1. 28., 원고 A은 2014. 3. 18. 각기 피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에 따라 망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들 및 H은 상속포기를, 피고는 한정승인을 한 점, ② 원고들과 피고가 2014. 9. 8.경 피고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별지 메모(갑 제8호증)를 기재하였으나, 그 기재 형식과 내용을 놓고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1. 12. 피고가 단독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2016. 4. 27. 위 판결에 기하여 J 임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점, ④ 원고 B 또한 2016. 10. 20. 피고가 단독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1. 6. K 임야에 관한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엽

별지

주식 목록

발행회사: E 주식회사

주식의 종류: 보통주

1주의 금액: 10,000원 끝.

